

# 특 별 강 연

11월 17일 (금) 15:25 -16:10

##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방향

신 관 호

(환경부 토양보전과장)

## 목 차

### □ 토양보전의 중요성과 토양오염의 특성

### □ 전국 토양오염도 현황

### □ 주요 토양보전대책

- 토양측정망 운영 · 관리
- 폐광산지역 토양오염개선사업
- 농약오염 방지 대책
-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
- 기타 토양오염 실태조사

### □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개정 내용

- 법률의 개정 배경
- 토양환경보전법 주요개정 내용

### □ 향후 토양환경보전 정책방향

## □ 토양보전의 중요성과 토양오염의 특성

- 토양은 자연생태계 주요 구성요소로서 동·식물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물질순환의 매체로서 매우 중요
- 토양은 유동성이 낮아 오염물질이 묻혀도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오염, 지하수오염 등 2차적인 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
- 한번 오염된 토양은 특성상 자정작용이 느리고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
- 토양은 수계와 함께 오염물질의 최종 싱커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토양오염방지에는 대기·수질·폐기물오염방지와 연계한 대책 필요

## □ 전국 토양오염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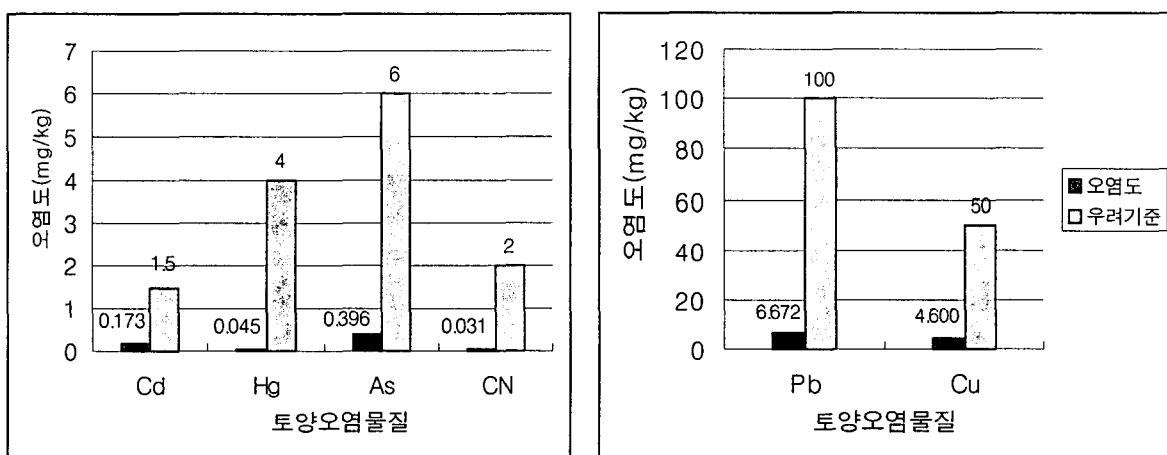
- '99년 4,495지점('98년 2,993지점) 운영결과 전 국토의 토양오염도는 '98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,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 $\frac{1}{10} \sim \frac{1}{100}$  수준임
  - 토양산도(pH)는 6.2를 나타내 자연함유량과 비슷한 중성을 보임
  - 유기인, PCB, 폐놀의 경우 불검출 수준이며, 유류는 미량 검출됨
  -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29지점으로 전체의 약 0.6%를 차지, 대부분이 광산지역, 제련소주변 지역 등에서 비소(AS)등 중금속이 기준초과

○ 토양오염도 현황

(단위 : mg/kg)

| 구 분           | pH  | Cd    | Cu    | As    | Hg    | Pb    | $\text{Cr}^{+6}$ | PCB     | CN    | 유기인 | 페놀    | 유류 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'99 평균        | 6.2 | 0.173 | 4.600 | 0.396 | 0.045 | 6.672 | 0.035            | N.D     | 0.031 | N.D | 0.000 | 0.319 |
| 전 국 망         | 6.0 | 0.203 | 5.101 | 0.421 | 0.076 | 7.376 | 0.038            | N.D     | 0.019 | N.D | 0.000 | 0.074 |
| 지 역 망         | 6.3 | 0.158 | 4.356 | 0.384 | 0.030 | 6.322 | 0.034            | 미조<br>사 | 0.037 | N.D | 0.000 | 0.380 |
| '98 평균        | 6.2 | 0.126 | 4.602 | 0.319 | 0.043 | 5.818 | 0.027            | N.D     | 0.022 | N.D | 0.000 | 0.279 |
| 자연함유량         | 5.7 | 0.135 | 3.995 | 0.560 | 0.085 | 5.375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우려기준<br>(농경지) | -   | 1.5   | 50    | 6     | 4     | 100   | 4                | -       | 2     | 10  | 4     | -     |

○ '99 토양오염도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비교



## □ 주요 토양보전 대책

### ○ 토양측정망 운영 · 관리업무

- '87년부터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측정망 운영(최초 250지점)
- '97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전국망과 지역망 체제로 이원화 운영 (2,904지점)
- '99년 토양측정망 4,500(전국망 1,500, 지역망 3,000) 지점운영
  - 조사항목은 Cd 등 중금속 6개, PH 등 일반항목 6개항목
- 2001년 측정망 조사지점 선정기준 개선방안 마련
  - 전국망 : 오염가능성이 적은 전·답 등의 농경지는 축소  
과수원, 학교용지 등 생활용지는 확대
  - 지역망 : 오염우려지역은 대폭확대, 비오염지역은 축소

### ○ 폐광지역 오염토양 개선사업 추진

- 전국 금속광산 906개소중 '97년부터 환경오염우려광산 158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씩 토양정밀조사(180백만원)
  - 정밀조사결과는 지자체, 관계부처에 통보 오염방지사업추진 협조요청
- '95년부터 1~4개 광산에 대하여 광미유실방지, 오염토양복토, 객토등 오염방지 사업 실시('99년까지 14개광산, 8,758백만원 국고지원)
  - 국고보조율(50%)이 타부처 사업에 비하여 낮아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기피

### ○ 농약 오염방지 대책

- '91년부터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을 조사하여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
  - 고독성농약의 사용량은 감소되고 있으나,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증가 추세
- '94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농경지 유출수 농약잔류량조사
  - 14개 상수원보호구역내 140개지점 조사
  - 다이아지논 등 수질잔류성농약 3개성분, 토양잔류성농약 파라코 등 2개 성분 조사

## ○ 토양 오염유발시설 관리

- 석유류 저장시설 등 토양유발시설은 설치자로 부터 신고를 받아 정기적인 토양 오염검사,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의 복원조치 명령
-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현황('99)

| 계                | 주유소              | 산업시설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기타난방용<br>저유시설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석유류<br>저장시설     | 유독물<br>저장시설  |                 |
| 19,625<br>(100%) | 12,007<br>(61.2) | 4,404<br>(22.4) | 109<br>(0.6) | 3,105<br>(15.8) |

- '96~'99년까지 총 39,857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0.6%(236개소)가 초과

## ○ 기타 토양오염 실태조사

- 사용종료된 전국 비위생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
  - 전국 778개 미승인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
- 클레이사격장 주변 농경지 등 토양오염실태 조사
  - 전국 11개 클레이사격장에 대한 조사결과 7개소가 우려기준을 초과
-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
  -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과거 유류저장시설 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파악하여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등 토양보전대책 수립

## □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개정내용

### 개정 배경

- 현재 국내의 경우 불량폐기물매립지, 산업시설지역, 군사시설 등 토양오염지역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토양오염정화는 미흡한 실정임

※ 현재 국내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폐기물매립지(1,445개소), 광산지역(502개소), 저장시설(255~5,109개), 과거 군부대주둔지역( >200개소)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최소 2,402~7,256개소인 것으로 추정됨(효율적인 토양오염조사체계 구축방안 연구, 1999, 한국토양환경학회)

- 이와 같은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·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조사를 직접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의 자발적인 토양오염조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

####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

##### 1)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자 책임 강화(안 제23조)

###### <현 행>

-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주체를 당해 오염원인자로 단순히 규정

###### <개정안>

-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책임 의무를 부과
  - 토양오염물질을 누출·유출 또는 투기·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
  -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·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
  - 양수, 경매 등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

###### <개정 사유>

- 현행 규정은 토양오염원인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
-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운영·소유한 자의 책임을 명시하여, 시설의 운영·소유자로 하여금 토양오염 예방에 힘쓰게 하고
- 시설 거래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도록 함으로써, 방치된 오염토양을 적기에 정화처리토록 하고, 자발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

## 2) 토양환경평가제도 신설(안 제10조의2)

### <개정안>

-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·양수하는 경우에 양도·양수인이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### <개정 사유>

-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양도·양수 당시에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
- 양도·양수 당시에 실시한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대해 증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, 토양오염의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
- ※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본 유치를 활성화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시에 환경문제가 매각협상과정에 중요한 협상항목으로 등장(선진국에서는 기업 M&A시 부지에 대한 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) 사업장 부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오염된 부지의 취득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당시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관계를 규명해 둘 필요성 대두

## 3) 토양정밀조사명령제도 신설(안 제15조제1항)

### <개정안>

- 시·도지사는 토양오염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

### <개정 사유>

-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게 함
- ※ 미국, 독일, 네델란드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오염원인자 및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조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음

#### 4) 토양오염실태조사체계 마련(안 제5조 제2항)

##### <현 행>

- 시·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,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

##### <개정안>

- 시·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

##### <개정 사유>

- 현행 토양오염조사체계는 매년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토양측정망체계로 되어 있어 오염우려지역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체계로 개편하여 토양오염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자 함

#### 5)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 강화(안 제23조의4 신설)

##### <개정안>

-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

##### <개정 사유>

- 토양정밀조사제도, 토양환경평가제도 등 각종 토양오염조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공정성·신뢰성이 요구됨
- 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각종 토양오염조사시에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, 지정취소 등 처벌규정을 마련함

#### 6)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체계 이원화(안 제2조제4호)

##### <현 행>

- “토양오염유발시설”이라 함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치·건물·건축물 및 장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(유류·유독물 저장시설 등)

### <개정안>

- 토양오염유발시설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이원화
  - “토양오염유발시설”이라 함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치·건물·건축물 및 장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(폐기물매립지, 폐광지역 등)
  - 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”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(유류·유독물 저장시설 등)

### <개정 사유>

- 현행 관리대상 토양오염유발시설(신고 및 토양오염조사대상 시설)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, 그외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은 토양오염유발시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 영역을 확대함

## □ 향후 토양환경보전 정책 방향

- 현행 토양오염의 사후 관리에 치중한 정책을 앞으로는 토양환경의 보전 영역까지 확대하여 추진
- 토양오염물질 기준항목의 추가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확대
  - 현행 기준물질은 11개항목으로 외국에 비해 부족하므로 Zn, 유기용제 물질 등을 추가(시행규칙 개정시 반영)
  - 현행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시설도 확대
-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·보전·활용기술 개발 보급
  - 국내의 토양침식 요인조사 및 토양침식방지 기술 개발
  - 대규모 토목공사시 표토보전방안과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보급
  - 표토보전을 위한 규정을 관련법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
- 오염된 토양의 복원 관련 업무의 개발
  - 토양복원산업의 육성방안 강구
  - 국내 실정에 맞는 저비용, 고효율 현장내 처리기술의 개발·보급

- 토양오염원인자에 의한 복원이 부적절한 경우 토양복원 비용부담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강구

-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의 연계관리방안도 모색

- 관련법과 오염기준의 통합 등 연계방안 강구